

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숙자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1398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3년 10월 16일

발 의 자 : 이숙자, 강석주, 김원태,
김지향, 남창진, 도문열,
민병주, 박상혁, 박중화,
박환희, 이종환, 임춘대,
최민규, 홍국표 의원(14명)

1. 제안이유

- 서울시설관리공단이 관리를 대행하는 지하도상가는 민간자본으로 조성되었고 서울시는 기부채납으로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현재까지 상가운영 수탁자가 변경되어도 상가 임차인들과의 계약을 계속 보장토록 하고 있음.
- 하지만, 대규모 쇼핑몰의 등장, 보행 환경과 상권의 변화, 온라인 거래의 확대 등으로 지하도상가 임차인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상가의 임차료를 기준으로 한 적정 대부료에 재산평정가액을 나눠 역으로 대부료 요율을 산출하면서 일부 지하도상가의 대부료 부담이 급증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.
- 따라서, 상권 활성화를 위해 상인들의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보장하고 서울시의 과도한 대부료 수입 확대로 지하도상가가 황폐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「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」 상의 지하도상가 대부요율을 1000분의 50으로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지하도상가에 대한 대부료율을 1000분의 50으로 함(제26조제8항 신설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⑧ 「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」상의 지하도상가 대부료 요율은 1000분의 50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특례) 제26조제8항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대부계약을 체결한 「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」상의 지하도상가에도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26조(대부료의	요금) ①~⑦(생	제26조(대부료의	요금) ①~⑦(현행	과 같음)
략)	<u><신설></u>	⑧ 「서울특별시	지하도상가 관리	조례」상의 지하도상가 대부료 요
		율은 1000분의	50으로 한다.	

문서번호

2023101600000078

비대상사유서

요청인 : 이숙자 의원

담당 : 오희선 과장
이정수 팀장
손제승 주무관

접수일 : 2023.10.16.

회신일 : 2023.10.20.

내용문의 : 02-2180-7954

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

목 차

1. 판단 근거
2. 작성자



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
재정분석담당관
Seoul Metropolitan Council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6조(대부료의 요율)제 8항을 신설하여 지하도상가 대부료 요율을 1,000분의 50로 정한 개정안으로 관련 부서 확인결과 기적용 요율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- 「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」 제26조(대부료의 요율)제1항¹⁾에서 대부료 요율을 1,000분의 50 이상으로 정하여 영업용 시설에 5%를 기적용하였기에 지하도상가 대부료 요율을 추가로 새로 규정하였다 하여도 서울시 재정수입 순감소나 재정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	재정분석담당관
담 당 관	오희선
추계세제팀장	이정수
주 무 관	손제승

☎ 02-2180-7954
e-mail : smclt22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시 첨부하지 않는 자료입니다.

1) 제26조(대부료의 요율) ① 영 제31조에 따른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 또는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,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(중략)